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재급여 우선지급제 도입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0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재해조사 정의 규정 신설 등	3
2. 재해조사의 법정기간 규정 및 산재급여 우선지급제 도입 등	7
3. 재해조사의 운영 사항 규정	18
4. 의사 등의 업무상 재해 신고	25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8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

협 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재해조사 정의 규정 신설 등 (안 제5조제9호, 제11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3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조사인 ‘재해조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5조제9호), 이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사업으로 명시하며(안 제11조제1항제4호),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5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재해조사”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조사를 말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

1) (자구) 정한 바 → 정하는 바

1. ~ 3. (생략)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u>심리·결정</u> 5. ~ 8. (생략) ② ~ ⑤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 <u>심리·결정 및 재해조사</u>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u> <u>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u> <u>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u> <u>대통령령으로 정한 바¹⁾에 따라</u> <u>재해조사를 할 수 있다.²⁾</u> ② ~ ⑧ (생략)
--	---

나. 검토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³⁾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

2) (자구) 재해조사를 할 수 있다. →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제31조)⁵⁾·사업주 등에 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제114조)⁶⁾·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제117조)⁷⁾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이상의 규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 권한은 존재하나, 명문의 법령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내규)을 통해 재해조사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공단이 업무상 재해의 판

-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 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단을 위한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현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이 없다는 입장임.

2. 재해조사의 법정기간 규정 및 산재급여 우선지급제 도입 등 (안 제33조제2항,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92조제1항제3호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해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법정 재해조사의 기간을 업무상 사고의 경우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의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되, 업무상 질병의 경우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또한 개정안은 ① 안 제33조제2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생계 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우선보상금)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42조의2 신설), 우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42조의3 신설), 근로복지사업에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92조제1항제3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생략) ②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u><신 설></u>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이하 “우선보상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에 의한 재해조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

<신 설>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
부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2. (생 략)

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
는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
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
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
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우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우선보상
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② ~ ④ (생 략)	3.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급여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기간,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의 내규에서는 역학조사의 기한을 180일로 하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⁹⁾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역학조사 결과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역학조사의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간 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2024년 63.9일로 63.4% 증가하였고, 이 중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72.4일에서 2024년 227.7일로 32.1% 늘어났음.

[산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재 평균 처리기간*	39.1	43.4	47.6	55.0	63.9
업무상 사고	15.5	15.3	15.9	16.5	17.7
업무상 질병	172.4	175.8	182.0	214.5	227.7

*업무상 재해로 처리된 최초요양, 유족급여, 최초요양 결정성 요양비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기간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건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2020년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441.4일,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275.2일이었으나 2024년 기준 각각 699.8일과 588.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2020년 ~ 2024년 역학조사 의뢰건수, 회신건수 및 소요일수]

(단위: 건, 일)

구분	전 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2020년	607	561	296.8	54	70	441.4	553	491	275.2
2021년	679	526	400.7	83	69	601.3	596	457	371.5
2022년	474	456	466.1	36	58	659.8	438	398	436.7
2023년	204	517	635.0	30	66	954.6	174	451	588.1
2024년	308	328	604.4	26	47	699.8	282	281	588.8

* 자료: 고용노동부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¹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재해근로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부가능한 상황이나,¹¹⁾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의 지원이 지체될 수 있고¹²⁾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이에 대한 불복¹³⁾

10) 원칙적으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산재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승인 후에 과도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도 청구할 수 없는 등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것임.

이에 개정안은 법정 재해조사기간을 명문화하고, 해당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원인 불명의 희귀 질병인 경우·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우선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재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며, 조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우선지급 후 최종적으로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이 있어 보험급여 지급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구체적인 환수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한 직업병의 복잡다기한 특성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빈곤 등 재해자의 개별·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13) 산재급여 결정은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심사, 재심사(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을 통해 이루어짐.

구체적인 사정으로 환수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환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33조제2항과 관련하여, 신속한 산재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재해조사 법정기한의 설정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업무상 사고의 현재 산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법정기한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산재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업무상 사고의 경우 17.7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 법정기한(7일)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의 재해조사 미완료 상태에서 우선보상금의 지급 사례가 상당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42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우선보상금 도입 논의 배경을 고려할 때 질병의 종류에 따라 우선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 문구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안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를 경우, 재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외 질병의 희귀성 등 종류에 따라 우선보상금을 지급받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보상금 도입 논의의 배경이 업무상질병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한 적기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임을 고려하면 질병 종류에 따른 우선보상금 지급 여부 구분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법체계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재해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이고¹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궁극적으로 해당 재해근로자는 보험급여 지급 요건(업무상 재해 인정)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어서 우선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도 안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당 부분 환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안 제42조의2제1항제2호의 문구와 관련하여, ①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부분과 관련하여,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중인데 명확한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인지, 공단이 재해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희귀질병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함. ② 또한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우

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

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문언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외의 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반면,¹⁵⁾ 일본은 치료비에 대하여만 우선지급제도를 실시하되 의료기관에 무이자 대부를 실시하고 산재 불승인 시 건강보험과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¹⁶⁾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법정기한과 관련하여, 업무상 사고의 경우 수급권자 결정,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등 조사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를 7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보험급여의 우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원인불명의 희귀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질병 종류에 따라 우선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최저 생계 수준 및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유사한 내용의 산재급여 우선지급 관련 산업

15) 다만, 임승지 등의 연구(“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41(1), 2021, pp. 73-74.)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는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독일은 70%, 프랑스는 50%)을 기준으로 장기간(최대 1년 내외)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16)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2025.2.)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¹⁷⁾에 대해 산재급여 우선지급 후 산재가 불인정될 경우 기지급된 산재보험금을 환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다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으로 인해 환수해야하는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지급금 환수가 어려울 경우 기금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7) 대한의사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530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산재급여 우선지급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제출함(2025년 2월 7일 제출).

3. 재해조사의 운영 사항 규정(안 제3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해조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공단이 재해조사에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대리인을 재해조사에 참석시키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것을 의무로 규정함(안 제33조제3항).

②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공단 재해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의무 및 재해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 거부 또는 방해의 금지, 재해조사 참석자의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3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③ 재해조사 시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 등 각종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조사권을 신설하고(안 제33조제7항), ⑤ 공단은 재해조사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재해조사의 종류·방법·대상·절차, 재해조사에 의해 제기된 연구사항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 ② (생략) ③ 공단은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재해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재해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하여 필

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해조사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재해조사의 종류·방법·대상·절차, 재해조사에 의해 제기된 연구사항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질병조사의 참여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¹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내규)은 ①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유해인자,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신청인, 보험가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이들을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⁹⁾

18)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19)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재해조사) ⑨ 소속기관장은 제8항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고, 동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등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제8항제1호 본문에 따른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현장 확인조사 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등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⁰⁾ 구체적으로 요청이 가능한 정보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건강검진 관련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²¹⁾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됨.²²⁾

개정안은 현행법령상 역학조사(작업장의 유해요인과 근로자의 질환의 상관관계)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인들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업무상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별표1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중 일부 발췌

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관련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검사 관련 자료

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자료,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자료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재해조사의 전체 범위로 확장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신청인등을 질병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질병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위해 필요한 의료정보·
고용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²³⁾ 근로복지공단의 내실 있는 재해
조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보완방안에 대하여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공단의 재해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 의무 및 재해조
사 거부·방해·기피 금지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때 현행법 제129조제3항제4호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시 공단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²⁴⁾하고
있으므로, 동 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현행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
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 마련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는 피보험자의 재직기간, 사

2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제131조에 따른 임신건강진단 결과 등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업장 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동일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²⁵⁾ 관련 2023. 12. 5. 실시된 입법공청회에서는 보험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령상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²⁶⁾ 재해조사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²⁷⁾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석,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재해조사 결과의 통보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915호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7) 2023.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자료, p. 15.

4. 의사 등의 업무상 재해 신고(안 제116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등’)가 4일²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안 제116조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안내·조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16조제6항·제7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생략) <신설>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28)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되는 부상·질병의 경우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²⁹⁾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데,³⁰⁾ 2024년 기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한 경우는 전체 요양급여 신청 건수 173,603건 중 107,884건(62.1%)임.

한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산재은폐가 전체 산재 발생건수 중 66%에 이른다는 지적,³¹⁾ 직업성 암 추정 건수 중 실

29)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상급종합병원, 일정한 시설·인력 요건을 충족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포함됨.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 보상건수는 1%에 불과하다는 지적³²⁾ 등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시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사등의 신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산재급여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산재보험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은폐된 산업재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2024년 말 기준 6,475개소로,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약국 제외³³⁾, 78,261개소)³⁴⁾ 중 8.3%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의사등의 산재 신고를 허용하여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산재 은폐를 억제하고,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산재보상 절차로의 이행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의사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무상 재해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31) 김정우(2020),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노동연구」 27(1)

32)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안전보건이슈리포트”(제1호), pp. 6-7.

33)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34) ‘2024년 종별 요양기관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검색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의사등의 업무상 재해 관련 신고는 의료인의 자발적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의사등의 산재 관련 지식 부족·행정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신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의사등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보험급여를 받기 이전이므로 안 제116조제5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환자’로 수정하고, 의사등의 신고가 있어도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정 이후에 환자의 보험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안 제116조제6항의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을 ‘환자’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의사의 산재 신고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관장기관과 의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의사가 산재보험관장기관에 근로자의 산재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³⁵⁾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근로자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함³⁶⁾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 “독일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p. 30.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

문 의 처
02)6788-5540

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